



2026-07-08

(26-4886)

페이지: 1/2

무역기술장벽위원회

원문: 영어

통보

다음 고지는 10.6항을 근거로 회람한다.

1. 통보국가: 미국 해당할 경우,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이름(3.2 및 7.2):
2. 담당기관(Agency responsible): 핵심 광물 및 에너지 혁신 사무소, 에너지부(DOE) [2331]
3. 조항 2.9.2 [], 2.10.1 [], 5.6.2 [], 5.7.1 [], 3.2 [], 7.2 [], 기타[X]에 근거해 통보: 이 규칙안은 해당 소비자 제품 및 상업용 장비에 대한 향후 에너지 절약 기준 및 시험 절차 개발을 위한 미국 에너지부(DOE)의 절차적 체계를 개정하고자 한다. 이 규칙안 자체가 의무적 제품 요건을 수립하거나 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, 향후 에너지 절약 기준 및 시험 절차가 개발되는 과정을 규율하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이 있다.
4. 해당제품(HS 또는 국정세율 품목. 해당할 경우, ICS 회원국은 추가로 제공될 수 있다): 에너지 절약; 시험 절차; 표준화. 일반 규칙(ICS 코드: 01.120); 환경 보호(ICS 코드: 13.020); 일반 시험 조건 및 절차(ICS 코드: 19.020); 에너지 효율. 일반 에너지 절약(ICS 코드: 27.015)
5. 제목(페이지 수, 언어, 열람방법): 에너지 절약 프로그램: 소비자 제품 및 특정 상업용/산업용 장비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에너지 절약 기준 및 시험 절차 검토를 위한 절차, 해석 및 정책(50페이지, 영어) 통보 문서 열람 링크 및/또는 요청 시 사본 제공이 가능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 https://members.wto.org/crattachments/2026/TBT/USA/26_03536_00_e.pdf
6. 내용: 규칙 제정 예고(NPRM) 공고 및 웨비나 발표 - 미국 에너지부("DOE" 또는 "the Department")는 "소비자 제품 및 특정 상업용/산업용 장비에 대한 신규 또는 개정 에너지 절약 기준 및 시험 절차 검토를 위한 절차, 해석 및 정책"("Process Rule")이라는 현행 규칙 제정 방법론을 개정하고자 한다. 구체적으로, DOE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안하고 있다: 특정 조치에 대해 부록 A를 DOE에 구속력 있게 적용한다; 최근 행정명령 및 부서 정책에 부합하도록 목표와 고려 사항을 개정한다; "상당한 에너지 절약"의 정의를 추가한다; "단계적 접근법"으로 설명되는 비교 분석 요건을 재도입한다; 특정 경제적 기준치를 포함한다;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대한 설명을 재도입한다; 여러 제~조에서 G/TBT/N/USA/1717/Rev.1/Add.3 으로 통보된 2020년 Process Rule 문구로 소폭 수정하여 되돌린다. DOE는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 수렴 외에도, 해당 제안을 논의하고 추가 의견을 수렴하고자 2026년 7월 15일(수) 동부시간 오후 1:00부터 4:00까지 웨비나를 통한 공청회 를 개최할 예정이다.
7. 적용할 경우, 시급한 문제의 성격을 포함하는 목표와 근거: 환경 보호, 비용 절감 및 생산성 향상
8. 관련 문서: 91 연방관보(FR) 42034, 2026년 7월 7일; 제10권 연방규정집(CFR) 제430부 : 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07-07/html/2026-13674.htm https://www.govinfo.gov/content/pkg/FR-2026-07-07/pdf/2026-13674.pdf

이 규칙안 예고 및 웨비나 공고는 도켓 번호 EERE-2025-BT-STD-0001로 식별된다. 도켓 폴더는 Regulations.gov의 <https://www.regulations.gov/docket/EERE-2025-BT-STD-0001/document>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, 주요 문서 및 지원 문서와 접수된 의견에 대한 접근을 제공한다. 문서는 도켓 번호를 검색하여 [Regulations.gov](https://www.regulations.gov)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.

관련 통보:

- [G/TBT/N/USA/1441/Add.3](#)
- [G/TBT/N/USA/1717/Rev.1/Add.3](#)

9. 채택 예정일: 추후결정

시행 예정일: 추후결정

10. 의견 제출:

의견 마감일: 2026-08-06

[] 통보일로부터 60일

WTO 회원국과 해당 이해관계자는 2026년 8월 6일 [동부시간 오후 4시](#)까지 [미국 TBT 질의처](#)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 WTO 회원국과 해당 이해관계자로부터 미국 TBT 질의처에 접수된 의견은 DOE와 공유되며, 의견 수렴 기간 내에 접수된 경우 Regulations.gov의 [도켓](#)에도 제출된다.

통보 관련 의견 처리를 위해 지정된 기관 또는 당국의 연락처 정보:

의견 제출처: 미국 WTO TBT 질의처(USA WTO TBT Enquiry Point), 이메일: usatbtep@nist.gov